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

됨에 따라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 제5항 · 제1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 제2항 · 제3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제4항 · 제5항 ·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 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 로 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5항제2호 및 같은항 제3 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 으로 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10년”으로 한다.</p> <p>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p>	<p>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 조의3제1항 · 제2항 · 제3항 ----- ----- -----. 〈단서 삭제〉</p> <p>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의3제1항제2호 ----- ----- -----.</p> <p>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의3제2항제2호 ----- ----- -----.</p> <p>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의3제3항제1호 나목----- -----.</p> <p>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특례제한법」</p>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